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(안 제7조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62
의 결 년 월 일	95. 3. 28 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(안 제7조 제2항)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새마을과장”을 “사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간사등) ①(생략)	제7조(간사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간사는 <u>새마을과장</u> 이 되며,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.	②..... <u>사회진흥과장</u>
③~④(생략)	③~④(현행과 같음)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감면조례준칙(안)에 의거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등 13개의 개별 감면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단일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